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갑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93 발의연월일: 2020. 11. 3.

발 의 자: 송갑석·문진석·박광온

서삼석 · 양정숙 · 이개호

이용빈 · 이장섭 · 이형석

인재근 • 전용기 • 조오섭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분할출원시 출원인의 실수 등으로 우선권 주장 취지의 기재 등이 누락될 경우 우선권 주장 기간 이내에 출원된 다른 상표등록출원으로 인하여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를 방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.

또한, 상표등록결정 이후 등록료 납부 전까지 심사관이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출원에 대해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자 있는 출원상표의 등록을 방지하여 상표등록의 무효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,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상표권이나 공유인 상표권이 이전되더라도 그 상표권자가 질권설정 또는 공유물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

로써 상표권자를 보호하며,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하여 출원 인에게 충분한 심판청구기간을 제공하여 심판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상표에 관한 절차에서 무효처분의 취소나 상표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권의 회복 요건을 '책임질 수 없는 사유'에서 '정당한 사유'로 완화함(안 제18조제2항 및 제77조제1항).
- 나.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에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나 출원 시의 특례 취지 및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출원에 대해서도 그 주장 및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(안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).
- 다. 상표등록결정 이후 심사관이 명백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8조의2 신설).
- 라.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차목이 제2조제1호카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(안 제92조제2항).
- 마.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상표권이나 공유인 상표권이 이전되더라도 그 상표권자가 질권설정 또는 공유물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함(안 제104조의2).
- 바.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

로 연장하도록 함(안 제115조 및 제116조).
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본문 중 "책임질 수 없는 사유"를 "정당한 사유"로 한다. 제4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이 제4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,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서면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면 또는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.
- ⑤ 제47조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3항·제4항을 준용한다.

제55조제1항 전단 중 "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"으로, "같은 조"를 "제54조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
- 2.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표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68조의2(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)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결 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(이하 "직 권 재심사"라 한다)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거절이유가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
 - 2. 그 상표등록결정에 따라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경우
 - 3. 그 상표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③ 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상표등록출원이 제 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의 취소 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.

제77조제1항 본문 중 "책임질 수 없는 사유"를 "정당한 사유"로 한다. 제87조제2항 전단 중 "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
- 2.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

제88조제2항 중 "제70조까지"를 "제68조까지, 제68조의2, 제69조, 제70조"로 한다.

제92조제2항 중 "제2조제1호차목에"를 "제2조제1호카목에"로 한다.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4조의2(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) 상표권자(공유인 상표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 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)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 권설정 또는 공유물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 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상표권에 대하여 지정상품 중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한하여 통상사용권을 가진다. 이 경우 상표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상표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제115조 중 "30일"을 "3개월"로 한다.

제116조 중 "30일"을 "3개월"로 한다.

제193조의 제목 중 "보정의"를 "보정 등의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210조제2항 전단 중 "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"으로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
- 2.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품분류전환 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

제212조 중 "제68조부터 제70조까지"를 "제68조, 제68조의2, 제69조, 제70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절차의 무효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2항 및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출원의 분할에 관한 적용례)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출원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5조제1항, 제68조의2, 제87조제2항, 제88조제2항, 제193조제3항, 제210조제2항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.

- 제5조(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에 관한 적용례)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행사 또는 공유물의 분할청구부터 적용한다.
- 제6조(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15조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정각하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상표등 록출원부터 적용한다.
 - ②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절차의 무효) ① (생 략)	제18조(절차의 무효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	②
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에 관	
한 절차를 무효로 하였더라도	
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	
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<u>책임</u>	<u>정당한 사</u>
<u>질 수 없는 사유</u> 에 의한 것으	<u>ਜ</u> ੈ
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	
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	
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	
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	
할 수 있다. 다만, 지정된 기간	
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	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45조(출원의 분할) ①・② (생	제45조(출원의 분할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
	출원이 제46조에 따른 우선권
	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
	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
	분할출원에 대하여도 우선권
	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, 분할의

<신 설>

제55조(거절이유통지) ① 심사관 전 연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 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(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, 이하 "거절이유"라 한다)를 통지하여야한다. 이 경우 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에 대
하여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서
면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
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
서면 또는 서류가 제출된 것으
로 본다.
④ 제3항에 따라 제46조에 따
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
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
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
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
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.
⑤ 제47조에 따른 출원 시의
특례에 관하여는 제3항·제4항
을 준용한다.
제55조(거절이유통지) ①
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
해당하는 경우에는
<u>제54</u>
<u>조</u>

<신 설>

②·③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- 1.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 결정을 하려는 경우
- 2.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표등 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 절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 제68조의2(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) ① 심사관은 상 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 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결 정을 취소하고 그 상표등록출 원을 다시 심사(이하 "직권 재 심사"라 한다)할 수 있다. 다 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거절이유가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
 - 2. 그 상표등록결정에 따라 상 표권이 설정등록된 경우
 - 3. 그 상표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

제77조(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 저 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 복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 하였거나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상표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 다. 다만,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 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 에는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 전할 수 없다.

	권 재심사를 하려면 상표등	록
	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	출
	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
	③ 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	통
	지를 받기 전에 그 상표등록	출
	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	.에
	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표	등
	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	없
	<u>었던 것으로 본다.</u>	
]	77조(상표등록료 납부 또는	보
	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	회
	복 등) ①	
	<u> 정당한 사유</u>	

- ②·③ (생 략)
- 제87조(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 결정 및 거절이유통지) ① (생 략)
 -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지 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출원인은 산업통상자 원부렁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③ (생략)

- 제88조(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 제88조(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 차 등에 관한 준용) ① (생 략)
 -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관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87조(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
결정 및 거절이유통지) ① (현
행과 같음)
② <u>다음 각 호의 어</u>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-

- 1.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 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
- 2.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지정상 품의 추가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지정상품 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 는 경우
- ③ (현행과 같음)
- 차 등에 관한 준용) ① (현행과 같음)
 - (2) -

하여는 제37조, 제38조제1항,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, 제46 조, 제47조, 제50조, 제53조, 제57조부터 제70조까지, 제128조,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, 제144조, 「민사소송법」 제143조, 제299조 및 제36 7조를 준용한다.

제92조(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저 관계) ① (생 략)

② 상표권자·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이 「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차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타인의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.

<신 설>

제68조까지, 제68	조의2,
제69조, 제70조	
제92조(타인의 디자인권	등과의
관계) ① (현행과 같음)	
②	
케이즈 케1 중 킈 모 세	
<u>제2조제1호카목에</u>	

제104조의2(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 사용권) 상표권자(공유인 상표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)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

제115조(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 판)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 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정등 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 정, 지정상품추가등록 거절결정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 거절결 정(이하 "거절결정"이라 한다) 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 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.

정 또는 공유물의 분할청구 전 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 상표권이 경매 등에 의 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상표권 에 대하여 지정상품 중 사용하 고 있는 상품에 한하여 통상사 용권을 가진다. 이 경우 상표권 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상표권 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 가를 지급하여야 한다. |제115조(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 퐈) -----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<u>30일</u> 이 -----<u>3개월</u>---제116조(거절결정에 대한 심판) 제116조(거절결정에 대한 심판) ----<u>3개 월</u>-

제193조(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의 특례) ①·② (생 략)

<신 설>

- 제210조(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 제210조(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 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) ① (생 략)
 -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상 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 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거 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인은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 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③ (생략)

- 제193조(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 -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는 제6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.

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-----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-

- 1. 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 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
- 2.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품분 류전환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 지한 거절이유로 상품분류전 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 우
- ③ (현행과 같음)

제212조(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전환한 준용)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, 제39조, 제40조, 제41조제3항, 제42조, 제50조, <u>제68조부터 제 70조까지</u>,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.

제212조(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
관한 준용)
<u>제</u> 6
8조, 제68조의2, 제69조, 제70조
<u>.</u>